행정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

행정조치	위반내용
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 중지 및 유통 · 판매중인 제품 회수	•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경우
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 공급 · 판매 중지	•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된 자동차 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 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 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 89조~94조)

벌칙	위반내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경우(수입 포함)
	• 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공급 · 판매한 경우
	• 공급 ·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 중지, 제품 회수 또는 공급 ·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 · 판매한 경우
	• 사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 · 판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경우
	• 사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연료를 사용한 경우
	• 제조 · 판매 · 사용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 · 판매한 경우
	•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검사받은 제품임을 미표시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조기준 부적합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 관련문의

기관(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031) 481-1402	www.me.go.kr/mamo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 560-7613	www.nier.go.kr/tprc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① 첨가제 ② 촉매제	 043) 240-7956 043) 240-7917	www.kpetr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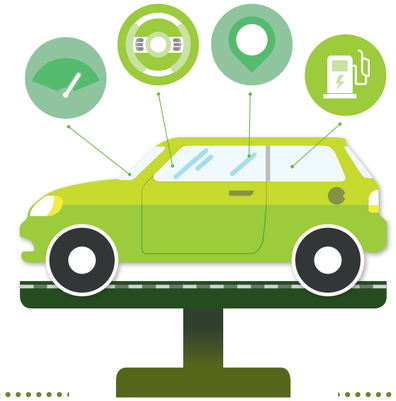
자동차연료 · 첨가제 및 촉매제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Tel. 031-481-1402 Fax. 031-481-1436

www.me.go.kr/mamo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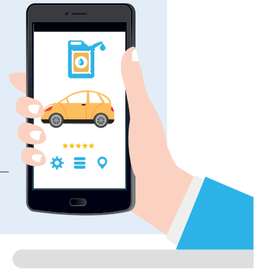
자동차연료 · 첨가제 및 촉매제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 제도란?

- 자동차연료(휘발유 · 경유)의 성분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환경품질등급(5개 등급★)을 제조(수입)사별로 평가 ·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제조(수입)사의 자율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적용대상

- 휘발유는 연간 20만 배럴 이상, 경유는 연간 60만 배럴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 공급하는 자동차연료



품질항목

-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 유출온도
- 경　유 : 밀도, 황함량, 다환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조사 및 공개방법

- 수도권지역 "저유소 및 직영(임대)주유소"에서 관리하는 휘발유 · 경유를 매월 채취하여 환경품질 분석
- 시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수입)사별 환경품질 등급을 산정하여 매월 공개

▸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알림/홍보 → 보도 · 해명
▸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www.me.go.kr/mamo → 대기마당 → 부서별자료(자동차관리과)

❖ 자동차연료 첨가제란?

- 자동차의 성능향상 및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연료에 첨가하는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연료의 1% 미만으로 첨가하고, 유사석유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 첨가제의 종류 :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윤활성 향상제 등

❖ 촉매제(요소수)란?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액상의 화학물질(주성분이 요소와 물(Urea+Water)로 되어 있어 요소수라고도 함)



※ 질소산화물은 기관지염,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인간과 자연에 많은 피해를 주는 광화학 스모그와 산성비의 주요 원인물질임
※ 촉매제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SCR의 정상 작동 및 배출가스 기준 준수를 위하여 사용됨

첨가제 및 촉매제 유통 시 준수사항

- **제조 · 수입사 :** 첨가제 및 촉매제는 판매 또는 사용 전에 적합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함
  - 시험의뢰 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 연구소 홈페이지 혹은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 연구소 홈페이지 : https://www.nier.go.kr/tprc → 정보/알림 → 연료/첨가제/촉매제 → 시험신청방법 등 참조)
    ▸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 https://www.kpetrotest.or.kr → 법정공인 → 시험신청 → 고객마당 →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검사업무절차 등 참조)
- **공급 · 판매자 :** 다음과 같은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 · 판매하여서는 아니됨
  -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첨가제 또는 촉매제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첨가제 또는 촉매제
    ▸ 첨가제는 휘발유용 0.55L 이하의 용기에, 경유용 2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함
- **사용자 :** 첨가제 및 촉매제는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촉매제는 주기적으로 충전하여야 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 제조 · 수입사 유의사항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표시방법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기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 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한국석유관리원장) 제○○호"로 표시
표시크기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 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
표시색상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변동사항 통보(업체명, 대표자, 제품명, 제조공정 등)

업체명, 대표자, 제품명, 제조공정 및 공장 밖의 저장시설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 통보

근거 | 「자동차연료 · 첨가제 및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0호, 2015.8.4.]

❖ 판매 · 사용자 확인사항

정품 첨가제 및 촉매제 확인 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 www.nier.go.kr/tprc → 정보/알림 → 연료/첨가제/촉매제 →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적합제품 현황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 대기마당 → 부서별자료 → 자동차관리과

-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면에 있는 아래의 문구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한국석유관리원장) 제○○호"

